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 허용 필요

3.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출제한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전출 허용(안 제5조, 제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4. 09. ~ 0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 ----- -----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 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 관으로의 전보
5. · 6. (생략)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연락처	(044) 201 - 8380